

[기자회견 2026. 8. 4. 11시 국회소통관]

○ 공동주최: 김준형 의원실, 가짜유엔사해체를위한국제캠페인

○ 공동주관: 국제평화포럼, 순교자의모후전교수녀회,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미불평등SOFA개정국민연대, Peace Maker 천만명운동

(참석자: 박영태, 이장희, 이시우, 고은광순, 류경완, 권명숙, 리미일, 이기묘)

○사회: 박영태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 실행위원)

○발언: 이장희, 이시우, 고은광순

○기자회견문 낭독

[취지 설명 및 소개발언: 김준형 국회의원]

[발언1]

남북한평화공존- 9.19 군사합의서 복원 및 유엔사 걸림돌 제거에서 시작해야

이장희-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 실행위원장/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 현 국가 차원 남북관계 교류가 전혀 없는 적대적 두 국가간 관계에 제일 긴급하고 필요한 것은 평화공존적 두 국가간 관계 복원.
- 평화공존적 두 국가간의 관계는 우선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
-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역대 모든 남북한 육해공 군사 관련 합의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상세한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 접경지역 땅, 바다, 하늘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사전금지하는 내용.
- 그런데 윤석열정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발사대응, 2023. 11. 22. 일부정지 (1조3항/비행금지구역)
- 이어 윤석열 정부(국무회의의결, 대통령 재가)가 2024년 6월4일 9.19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시킴.
- 전면 효력정지 이후 군사분계선(MDL) 및 서북도서일대 군사훈련, 대북확성기방송 등 우리 군의 대북 군사 군사활동 제약 완전 해제.
- 또 이를 빙자, 2024년 10월 3일, 9일, 10일 야간. 윤석열, 국내정치용으로 평양 상공 드론 침투, 위험한 군사적 도발.
- 유엔사(UNC)는 윤석열의 군사적 도발을 일체 통제 하지 않고 방치함.
- 이 재명 정부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2025.2.18.), 그러나 충분하지 않음
- 평화공존 완벽한 출구전략은 9.19 남북군사합의 완전 복원, 이를 방해하는 유엔사의 비무장지대(MDL) 관리권, 한국정부에 전면 이양이 정답.
- 1991년, 1994년 북한과 중국의 탈퇴로 정전협정상 DMZ 공동 관리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가 완전히 중단, 쌍방합의구조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사가 무효화된 정전협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독단적으로 DMZ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월권행위임.(당사자 합의원칙 위배)

-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답임.
- 대한민국 정부는 DMZ 관리이양협의 문제를 남북한,미국,중국 4자회의를 공식으로 제안하길 바람.

***결론:** 남북한평화공존은 9.19 군사합의서 복원 및 그 유엔사 걸림돌 제거에서 시작해야

[발언2]

9.19남북군사합의서 선제적 복원과 실행을 촉구한다.

(유엔사의 관리권 전부 이양을 촉구함)

이시우-사진가. 가짜유엔사해체를위한국제캠페인 실행위원

9.19남북군사합의서는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공포된 법령이다. 다른 남북군사합의서와 달리 유일하게 법령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합의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정전협정에 따라’라는 단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정전협정에 따라’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남북간 합의임에도 유엔사가 개입하는 길을 열어 놓았고 번번이 유엔사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9.19합의서 실행조치로 한강하구수로조사시 남북은 유엔사의 개입없이 온전히 9.19합의에 기초하여 실행조치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윤석열정부는 9.19남북군사합의서를 2023년 11월 일부효력정지 시킨데 이어, 2024년 6월 전면효력정지 시켰다. 내란특검에 의하면 이는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내란과 외환유치공작의 준비작업이었다. 북은 당시 “9.19합의 파기가 남측이 드론을 이용한 대북심리전에 직접 나서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이는 훨씬 심각한 외환유치공작으로 현실화되었다.

대북 드론 침투작전시 유엔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하지 않았다. 『정전협정』6항에 의하면 유엔사령관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

장지대를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군용무인기의 조선침투는 한국 측에서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비무장지대 내에서, 비무장지대로부터 조선 측을 향하여 일으킨 적대행위였다. 이에 대해 유엔사령관은 정전협정 17항에 따라 적대행위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와 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부작위에 의한 실행에 가담한 것이다.

9.19남북군사합의서 복원은 내란청산의 연장선에 있다.

1. 복원

이재명대통령은 작년 8.15경축사에서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을 약속했다. 9.19남북군사합의는 남북관계발전법 22조에 의해 국무회의 비준동의로 공포되었고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즉시 복원된다. 9.19합의가 일종의 조약이라면 비무장지대법, 한강하구법, 서해5도법은 이행법률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9.19군사합의서의 복원은 이들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2. 실행

1단계 유엔사 비관련 사업

우리는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선제적 복원과 함께 유엔사와 충돌하지 않고도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서해5도 평화수역 파시:

9.19남북군사합의서에 서해 평화수역은 5일간 체류를 보장하고 있어 파시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남북공동순찰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중국불법어업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다. 서해5도 수역은 정전협정상 유엔사의 관할권이 없다. 남북합의만 된다면 유엔사의 어떤 개입도 없이 즉각 합의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한강하구 선박통행검사소:

유엔사가 관리권을 주장하는 한강하구는 만조시 수륙접촉선까지이다. 따라서 갯벌의 육지부는 한강하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엔사 개입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9.19합의서는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해 남북이 원하는 위치에 각각 선박통행검사소를 설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한강하구공동이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로 조선 측에 한국의 9.19합의 이행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철조망·용치철거와 감시체계전환사업:

『정전협정』 제13항 ㄱ목은 협정발효 3일 이내에 모든 철조망을 제거하도록 했다. 그러나 1967년 12월 24일 비무장지대에 현재의 철조망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한강하구에 현재의 철조망이 설치되었다. 이들은 모두 정전협정위반이다. 따라서 이는 유엔사로서도 협조해야할 사항이다. 김포시는 한강하구 일부구간의 철조망을 제거하고 첨단감시장비를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전환 사업을 마무리 한 경험이 있다.

1974년과 1975년 사이에 인민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해안선에 용치를 설치하였다. 용치(Dragon's Tooth)는 1938년 독일제국군이 처음 사용한 콘크리트 대전차 장애물이었다. 박정희정부는 대만의 진먼다오를 시찰하고 와서 그대로 모방하여 서해5도에 설치하였고 한강하구의 지천합류부에도 상륙저지용 용치를 설치하였다. 용치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선박훼손 등 치명적 위험요소가 되었으며 한강하구와 서해의 접근과 이용을 막음으로서 스스로 관할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용치 제거는 유엔사와 무관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면사무소 설치:

1972년 개정된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이북에 걸친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의 면장은 면관할구역 안에 주민이 상주하게 될 때 임용’한다고 하여 면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개정으로 2개면 이상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21년 비무장지대 내 4개면을 모두 관할하는 면사무소와 면장을 갖게 되었다. 이로서 장단면의 비무장지대는 대한민국의 법적관할권이 회복되었다. 장단면처럼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면들에 대해 관할권을 회복하는 조례제정운동이 요구된다. 이는 유엔사와 전혀 충돌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이다.

우선순위

정부는 9.19남북군사합의 실행의 순서를 유엔사관리권이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즉 서해-한강하구-비무장지대 순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행법률도 서해평화수역법-한강하구공용수역법-비무장지대법 순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단계 유엔사관리권 부분이양사업

유엔사의 실무역량의 한계로 정전협정관리업무의 대부분은 한국군에 인수되어 있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법령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반면 『유엔사규정』은 어떤 국내법적지위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중심으로 국군의 관할권은 확대하고 ‘유엔사’의 관할권은 축소해가는 방향에서 관할권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전협정』제10항에 의하면 ‘유엔사령관’이 남측비무장지대 출입인원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을 호위할 민정경찰 수는 군정위 만이 결정할 수 있다. 20항에 따라 군정위는 협정서명 쌍방에 의해서만 구성된다. 그런데 1994년 인민군과 중공군의 군정위 철수로 군정위는 해체된 상황이다. 유엔사군정위는 군정위가 아니다. 따라서 10항이 명시한 유엔사령관의 비무장지대출입 허가권은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없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의 관리공백은 정전협정으로는 대체할 수 없고 9.19남북군사합의서로는 대체할 수 있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새로운 비무장지대 관리규정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사교전규칙 역시 합참교전규칙으로 대체해야 한다.

3단계 유엔사 관리권 전부이양

보수적 국제법학자인 제성호교수도 2006년부터 “유엔사가 우리측에게 관할권을 이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2019년 8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검증을 위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서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이 데프콘(전투준비태세)3까지는 한국군에 작전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유엔사가 평시작전권에 관여하겠다는 뜻이다. 한국군의 평시작전권은 이미 1994년에 전환됐다. 2018년 정부당국자에 의하면 한국 합동참모본부-유엔사-연합사 간 관계 관련 약정(TOR)체결시 “우리가 약정에서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해 유엔사가 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고치려고 했는데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에서 마지막 걸림돌이 유엔사 문제임이 드러난 것이다.

정전이후 한반도위기는 전시작전이 아닌 위기시 위기조치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위기관리권까지 전시작전권 전환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전위기관리를 유엔사령관이 고집하는 이상 완전한 전작권 전환은 요원해진다. 즉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연합사만이 아니라 유엔사의 권한까지 전환받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9.19남북군사합의서의 복원과 실질화만이 유엔사의 관리권 전부이양을 가능케 하고 온전한 전작권 전환을 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아래 조치들을 중단 없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1. (즉각 복원) 국무회의 의결로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즉각 복원하라.
2. (우선 실행) 유엔사의 권한이 약한 지역과 사업부터 9·19합의 이행사업을 점진적이고 성과적으로 추진하라.
3. (부분 이양) 유엔사 교전규칙을 합참 교전규칙으로 대체하는 등 유엔사 관리권의 부분적 이양을 신속히 추진하라.
4. (전면 이양) 9·19합의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유엔사의 위기관리권과 관리권 전부를 이양받아 온전한 전작권 전환을 완수하라.

[발언3]

유엔사를 아시나요?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이사장)

- 1)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 결의(제3390호)를 통해 유엔사의 해체와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명시된 바 있다.
- 2) 1994년 부트로스 갈리 당시 유엔 사무총장 "유엔사는 유엔 총회나 안보리의 지휘를 받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며, 미국 지휘하의 조직" 밝혀
- 3) 2023. 4. 18. 미 하원 군사위/ 2024. 3. 21. 미 상원 군사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 "유엔사령부는 유엔 평화유지기구가 아니며,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사령부(multinational force command)"라 밝힘
- 4) 2024.10. 25. 국방부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등 60여 개 시민단체 질의서에 유엔사 홈페이지 인용 <유엔사는 미국 국방부 장관 겸 합참의장의 지휘 아래 운영되며 뉴욕 유엔본부나 산하 기관 지휘 및 통제를 받지않는다>고 답신한 바 있다. 정부도 유엔사가 유엔과 관계없음을 밝힌 것. "UNC operates under the direction of the U.S. Secretary of Defense and Chairman, Joint Chiefs of Staffs and does not fall under the command and control of UN Headquarters in New York or any of its subordinate organizations."

=> 사실이 이와같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국회, 학계, 주류언론에서 그동안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작전통제권을 유엔사와 같은 외국 군사기구에 넘길 수 없도록 법률로 못박아야 한다. ① 한미 연합지휘약정(TOR) 개정, ② DMZ 관할권 회수, ③ 국회의 군사 주권 통제 입법, ④ 유엔 명칭 오용에 대한 국제 공론화가 필요하다.

[기자회견문]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선제적 복원과 실행, 유엔사의 관리권 전면 이양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진정한 평화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선제적 복원과 차질 없는 실행, 나아가 유엔사의 관리권 전부 이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공포된 유일한 법령 지위의 남북 군사합의입니다. 과거의 합의들과 달리 ‘정전협정에 따라’라는 단서조항을 없앴으로써 외부의 불필요한 개입 없이 남북이 주도적으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9·19 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시켰고, 이는 드론 침투 등 심각한 외환유치공작과 군사적 위기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는 정전협정상 적대행위 중지 의무를 저버린 채 방관했습니다. 9·19 합의의 복원은 파탄 난 한반도 평화를 바로잡고 내란 적폐를 청산하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다음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가체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즉각 복원하십시오.

9·19 합의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즉시 복원될 수 있으며, 이는 비무장지대법·한강하구법 등 이행법률의 법적 근거를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사와 충돌하지 않는 사업부터 점진적·선제적으로 실행하십시오.

유엔사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거나 약한 서해 5도, 한강하구, 비무장지대 순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서해5도 평화수역 및 파시 조성: 유엔사 관할권이 없는 서해 수역에서 남북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 불법어업을 차단하고 평화수역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한강하구 선박통행검사소 설치 및 장애물 철거: 육지부 갯벌을 활용한 검사소 설치, 정전협정 위반이자 치명적 위험 요소인 철조망·용치 철거를 우선 단행해야 합니다.

DMZ 내 지자체 관할권 회복: 지방자치법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면사무소 설치 및 조례 제정으로 대한민국의 법적 관할권을 점진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유엔사의 관리권을 단계적으로 이양받아 국군의 관할권을 확대하십시오.

유엔사 규정은 국내법적 지위가 없으며, 군정위가 해체된 현 상황에서 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 등은 실효성을 잃었습니다. 유엔사 교전규칙을 합참 교전규칙으로 즉시 대체하고, 법적 근거를 갖춘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중심으로 관리 공백을 메워나가야 합니다.

넷째, 유엔사의 위기관리권을 포함한 관리권 전부를 이양받고 온전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완수하십시오.

한반도의 위기는 전시 작전이 아닌 평시 위기조치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유엔사가 평시 위기관리권과 정전협정 관리권을 고집하는 한 완전한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9·19 합의의 전면적 실행만이 유엔사의 관리권을 완전히 이양받고 진정한 안보 주권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복원과 실행, 그리고 평화 주권 회복을 향한 길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및 평화주권 회복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의:김준형의원실 010-4242-8201/이장희010-6272-2185/고은광순 010-2207-0601